##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40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인영・이학영・전용기

박상혁 • 이정문 • 이기헌

장철민 · 임광현 · 김동아

김성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경과 등"을 "경과, 폐업·파산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	
명정보의 처리 기간 <u>경과 등</u>	<u></u> 경과, 폐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	<u>업·파산 등</u>
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	
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